

2026년 제2회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고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8월 13일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장

1. 채용분야 · 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인원	근무예정지	담당업무
청원경찰	1명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 '안산준법지원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9)	- 경비·보안 및 방호 - 대민업무 지원 및 출입 통제 등 질서유지 - 청사 순찰, 테러 예방 등 시설 안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2. 채용 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6. 8. 13.(목)~8. 20.(목)	2026. 8. 26.(수)	2026. 9. 4.(금)	2026. 9. 8.(화)

※ 상기 일정은 시험 진행상황,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홈페이지(법무부, 나라일터)에 게재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관련 세부 일정 등은 홈페이지(법무부, 나라일터) 및 개인이 제출한 휴대
전화 번호를 통해 알림

3.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 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1)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 18세 이상인 자(2008. 9. 4. 이전 출생자)로서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10조의6(당연 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3)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체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4) 성별 · 학력 · 주거지: 제한 없음
- 5)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6) 주야간 근무가 가능하고, 임용 즉시 근무할 수 있는 자
※ 비상 대기소 등의 별도 지원 없음
-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지 않은 자
- 8)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우대 사항

☐ 직무 관련 근무 경력

- 청원경찰, 경찰, 경비업체 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분야 근무 경력

☐ 관련 학과 졸업

- 경호학과, 경호비서학과, 경호정보학과, 안전경호학과, 경호안전학과, 경호경찰학과 등 채용 담당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

☐ 관련 자격증

- 일반경비지도사(경찰청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 2급(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 무도 유단자

- 공인 무도 단증 등은 원서접수 최종일(2026. 8. 20.)까지 취득한 것에 한함
- 무도 분야 단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

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

【공인무도 단종 인정단체(60개)】

구 분	단 체 명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0)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 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 상 활동 중인 단 체 (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50)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합기도유술협회,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회, ITF태권도협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 세계국무도총연맹,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5. 가점 사항

가. 법정가점(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취업지원)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취업지원)
-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취업지원)

※ 1개의 가산점만 적용되므로, 중복 시 높은 가산점(1개)을 적용

※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을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제출

나. 사회형평가점

-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에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중복 가점 불가(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1개의 가점만 적용)

※ 가점은 응시자가 제출한 개별 증명서로 확인(증명서 미제출 시 불인정, 특히 2년 이상 등 기간이
특정된 경우, 대상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수 제출, 기간 확인 불가 시 불인정)

다. 가산 점수의 합계(법정가점 + 사회형평가점)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6. 선발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심사 대상 : 응시원서 접수자 전원
- 전형 방법
 -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한 자 중에서 자격증 등 가산 점수의 최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까지 포함
 - 소극적 전형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적극적 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적인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위로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 결정 가능

나. 제2차 시험: 체력검정 및 면접전형

- 시험 대상: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전형 방법: 체력인증(10%), 면접평가(90%) 합산
- 체력검증(10점 만점)
 - 검증 대상: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인별 체력검정 실시
 - 검증 방법: 국민체력100(<https://nfa.kspo.or.kr>)을 통해 체력검증을 신청, 주거지에서 가까운 체력인증센터를 방문하여 체력인증 실시, 평가 결과물 '체력인증서'로 체력검증 대체하며, 공고(공고일: 2026. 8. 13.) 이후 실시한 체력인증서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
 - 체력인증서(원본) 제출일: 면접 평가 당일 제출
 - ※ 주의사항: 면접평가 당일 체력인증서 원본(평가내역 포함, 사본 불인정) 제출 시에만 점수 인정
 - 배점 기준 : 체력 등급 1등급 10점, 2등급 8점, 3등급 6점, 등급 외 2점, 미제출 0점으로 면접 전형 시 반영함
 - ※ 총점(30점)의 12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1종목이라도 1점에 해당하면 탈락 처리함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 외	미제출
점수	10	8	6	2	0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체력인증서 발급 방법 ❖

1. 응시자 주소지 관할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역 체력 인증센터에 개별 사전 예약
2. 체력 인증센터 방문 및 체력 측정
3. 체력인증서(평가 내역 포함) 발급, 재발급 시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가능(<http://nfa.kspo.or.kr>)
 -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바코드, 직인, 워터마크가 삽입·출력된 경우만 인정
4. 유의 사항 : 다수 응시자 측정 및 센터 운영 변경 등의 사유로 응시자 개인별 희망하는 측정 일자 또는 시간의 선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체력 인증센터에 사전문의 후 예약 필수

○ 면접전형(90점 만점)

- 면접 대상: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평정 방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시행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종합평가
- 배점 기준: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으로 평정

등급	상	중	하
점수	18	12	6

- 평정요소 (5가지): ①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성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7. 보수 수준 및 근무시간

구분	내 용
보수	■ 기본급 월 2,133,000원(1호봉 기준, 세액공제 전) ※ 추가 근로(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등 별도
근무형태 / 시간	■ 주5일 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휴게 1시간) ※ 상기 근무형태는 안산보호관찰소 근무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청원경찰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함.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최대 2년)에 따라 호봉산정에 반영할 수 있음. 그 외의 경력은 보수 산정 시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함

8. 최종합격자 결정

가. 각 위원이 채점한 면접시험 평점과 체력인증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동점자 발생 시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저소득층) > 면접시험 성적 순으로 결정
- 평정요소(5가지) 번호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이도 동일할 때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나. 추가 합격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임용승인이 안될 경우 차점자로 임용승인 신청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임용 결격사유 발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9.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시간: 2026. 8. 13.(목)~8. 20.(목)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 등기우편 접수 주소

(우) 15358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9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 행정지원과(5층) 채용담당

※ 문의전화: 031-400-1492

※ 등기우편 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인 2026. 8. 20.(목)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함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통보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 방문 접수 주소: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 행정지원과(5층)

※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해 대리접수 가능(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지참)

다.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라. 응시수수료: 없음

10. 제출서류

구분	서류	비고
필수	제출서류 총괄표 1부	○ 별지서식 제1호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이력서 1부 ※ 우대요건 기재 시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필수 첨부	○ 별지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자필 서명 필수	○ 별지서식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자필 서명 필수	○ 별지서식 제6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 별지서식 제7호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번호 뒷자리 현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최종학교 졸업(재학, 휴직, 재적) 증명서 사본 1부	
선택 (해당자에 한함)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군 경력의 경우, 군 경력확인서 별도 제출	○ 별지서식 제8호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무도 단증 사본 각 1부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1부	○ 별지서식 제9호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1부	○ 별지서식 제10호 ※ 필요시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 청구

<공통사항>

1. 응시원서: 사진 미 부착, 공고문에서 내려 받아 작성

2. 이력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관련 분야 근무경력만 작성
-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됨. 경력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기재하지 않음

<경력인정 기재 요령>

- ◎ 경력인정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아래 4가지 사항들이 모두 명시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업체(기관)명
 - 근무시간
 - 담당업무(관련직무: 경비, 청원경찰)
 - 근무형태(주 근무시간)
-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필요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표 등 해당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 근무시간 기재 시 정확한 시간으로 기재 요함(ex. 상근 40시간)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ex. 4년간 주 20시간 근무한 경우: $4\text{년} \times 20\text{시간} / 40\text{시간} = 2\text{년}$ 인정)
- ◎ 폐업회사의 경우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②③④ 모두 제출하여 관련 경력이 입증되어야 우대 가능
- ◎ 해당 경력 인정 여부는 서류전형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예정

3. 자기소개서: A4용지 1매 이내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원본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5. 자격요건 검정을 위한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7. 최종 학력(졸업)증명서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발행분에 한함
-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부(초·중·고졸은 해당 졸업증명서 제출)
- 청원경찰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경호학과, 경호비서학과, 경호정보학과, 안전경호학과, 경호안전학과, 경호경찰학과 등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 졸업증명서

<개별사항>

1. 응시관련 (해당)분야 경력증명서(근무지별)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발행분에 한함
- 경력의 계산은 원서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해야 함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관련분야에 해당하는지 모호할 경우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여야 함

※ 경비업체 경력은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업체만 인정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2. 응시관련(해당)분야 자격증, 무술유단자증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 무도 공인 유단자는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가장 높은 것 합산

3.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4.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 졸업한 학과(학위)가 청원경찰 관련학과(학위)와 동일계통이나 명칭이 상이한 경우 제출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출처 및 내용이 불분명한 증명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퇴직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 나.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응시서류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라.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출생지, 학교명,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합니다.
- 마.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록한 자는 합격 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아. 경력증명 사본을 첨부한 응시자는 최종합격 후 임용 전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자. 본 공고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수시로 확인 바랍니다.
- 차.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카.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 타. 응시요건에 지역제한은 없으나 시험 응시자에 대해 별도의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이 제공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파.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2. 우리 기관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 합격하지 못한 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4.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주관기관에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된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접수여부를 채용주관기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5.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보관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담당자(031-400-149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총괄표

성명	채용예정기관	응시분야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	청원경찰

구분	목 록	작성 여부
필수사항	1.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2호	
	2. 이력서 *별지서식 제3호	
	3. 자기소개서 *별지서식 제4호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제5호 ※ 자필 서명 필수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제6호 ※ 자필 서명 필수	
	6.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7.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번호 뒷자리 현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8. 최종학교 졸업(재학, 휴학, 재적) 증명서 사본 1부	
개별사항	9.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 ※ 군 경력의 경우, 군 경력확인서 포함 ※ [별지서식 제8호] 참조	
	10. 관련 자격증, 단증 사본 각 1부	
	11.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별지서식 제9호	
	12.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작성 또는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 표시
- 필수서류 미제출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필수서류에 서명 누락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며,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서류 전체를 클립 또는 집게를 사용하여 묶음
- ※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가 아니거나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증 및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 서류는 제출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본인은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장 귀하

응시원서(원본)			
응시분야		청원경찰	
응시번호	미기재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응시분야		청원경찰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1. 등기우편 접수 시 응시번호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응시표는 송부하지 않습니다.
2. 면접당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작성요령》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담당자가 기재 예정)
- ②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③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④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또는 ‘X’기재
- ⑤ 사진 미부착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자격 : 양쪽 시력 필수 기재
- ③ 우대사항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직무분야 관련 경력만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증빙서류 첨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공고일 이후 발급한 경력(재직)증명서에 한해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인정 공고일 이전 발급한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일까지 경력 인정)
- 최근 경력부터 기재
- 근무기관 : 기관명과 부서명 모두 작성
- 근무기간 : 시작일(연, 월, 일) ~ 종료일(연, 월, 일)
- 직위(직급) : (민간) 과장, 팀장, 대리 등의 직위
- ※ 직위(급)은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 : 전임/비전임, 근무시간 필수 기재(주 35시간, 주 40시간 등)
-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 통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학위 학위만 기재(※출신학교명 기재 금지)

- 대학이상은 전공, 학위 취득일 및 학위(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기재
- 고졸 이하의 경우 학위취득일에 졸업일, 학위 종류에 고졸, 중졸, 초졸 기재

자격증/단증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단증만 기재

- 자격증/단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자격증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분야	청원경찰
-----	--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원동기, 직무에 임하는 바람직한 태도상, 직무수행 방향(계획) 등 기재)			
※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	---	-------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에서 시행하는 2026년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원경찰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청원경찰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청원경찰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근무 기간 동안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청원경찰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청원경찰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청원경찰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근무 기간 동안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원경찰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청원경찰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청원경찰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근무 기간 동안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원경찰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원경찰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경력(재직) 증명서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근무시간)	비고
	부터	까지					
	2000.00.00	2000.00.00	(주) 0000			전임·비전임, 주 40시간	
제외 기간	제외 기간			제외사유			
	'00. 00. 00. ~ '00. 00. 00.			ex) 휴직 등			
상별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연락처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연락처	

※ 담당업무 : (직무관련)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 근무형태 : 전임·비전임 여부, 주당 근무시간 기재
※ 비고 : 기타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 발급자 : 발급 업무 담당자 직접 기재(발급신청자X)
※ 확인자 : 인사부서 담당자 직접 기재(발급자의 직속상급자 혹은 소속부서 팀장 및 과장 등)
※ 발급자, 확인자 : 반드시 기재 및 서명(날인) 요망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대학(교)	학부	학과	년도 졸업

1. 위 사람이 _____ 학위를 취득한 우리 대학(교)의 _____ 학과(전공)는 2026년도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 공고문에 게재된 _____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확인하고,
2.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에서 공고한 청원경찰분야 관련학과(경호학과, 경호비서학과, 경호정보학과, 안전경호학과, 경호안전학과, 경호경찰학과 등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 학교 연락처(전화) :

담당자 (**직**) **성명** (**서명**)

• • •

학 과 장	날인
단과대학장	직인

()대학교 총장 (직인)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장 귀하

<작성 시 유의사항>

- 작성 시에는 반드시 2026년 제2회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 청원경찰 채용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서류 작성 시에는 이수과목에 근거해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편입학생의 경우 이수과목 및 자격요건과 동등 학력이상의 학점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공한 학과 명칭이 공고문상의 학과 명칭과 상이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의 ○ ○학과는 공고문에 기재된 ○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 문구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서류는 추천요구 학생소속 학과의 학과장과, 단과대학장을 경유하고 총장의 직인(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본 서류는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류로 함께 사용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담당자(031-400-1492)에게 연락 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장 귀하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
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
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
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